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전진숙 · 오세희 · 장철민
남인순 · 김한규 · 이수진
이개호 · 김남희 · 김정호
이인영 · 전용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전·현 연인, 직장동료 등)에 있는 경우가 많고 사건 종결 이후에도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잠정조치 등 형사적 처벌 이전의 예방적 조치가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 조치의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구제 수단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치의 상대방, 즉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규정이 미비하여 피해자 보호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소되는 경우,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사건을 불송

치하는 경우,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는 경우 및 잠정조치를 받은 스톱킹행위자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법원이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관련 기관에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취지와 내용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스톱킹행위자가 석방되는 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가 같은 법 제258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항고에 따른 통지) 항고법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생략) <u><신설></u> <u><신설></u>	제6조(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① ----- ----- ----- -----, 제5조제4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함에 있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형태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지의 요건과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제10조(잠정조치의 집행 등) ①

~ ⑤ (생략)

<신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생략)

<신설>

<신설>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석방되는 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검사가 같은 법 제258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통지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의2(항고에 따른 통지) 항고법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잠정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그 법

제15조(재항고)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u>제13조 및 제14조</u>를 준용한다.	<u>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u> 제15조(재항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u> <u>의2</u>----.
---	---